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1269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

가. B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2. E 육성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펌한영

담당변호사 이소현, 이언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기철

피고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전서현, 고샬리영

변론 종결2024. 10. 17.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와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22.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8. 접수 제61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A 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과 E 육성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벤처투자조합이다. 원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자 이 사건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고, 원고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다(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 이 사건 펀드,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PC, 핸드폰, TV 등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 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반도체를 보호하는 재료인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Epoxy Molding Compound, EMC)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전기 전자용 에폭시 수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G은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G의 부인이다.

나.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2020. 3. 19. H, G과 1,333,316,596원, 666,658,298원을 납입하고 H의 전환상환우선주식 14,348주, 7,174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주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H, G은 H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경우에 H, G은 원고들에게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1조 제1항 제3호),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 원고들은 H, G에게 총 주식인수대금의 15%를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제3항)고 약정하였다.

H은 2023. 8. 22.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는데, H, G은 원고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원고들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G에 대한 199,997,489원(= 1,333,316,596원 × 15%, 원 미만은 버린다), 99,998,744원(= 666,658,298원 × 15%, 원 미만은 버린다)의 위약벌채권이 성립하였다.

다. G과 피고의 증여계약

G은 2014.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G은 2022. 9.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9. 28.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 무렵 H은 유동자산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상황으로서 과도한 차입경영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 외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은 시장 상실에 따른 수익성 감소, 제조비용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가격 책정에 따른 이익률 감소 등으로 재정적 파탄이 심화되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은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H은 유동자산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상황으로서 재정적 파탄이 심화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H, G이 원고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원고들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23. 8. 22. H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다. 원고들의 G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G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는데도 부인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일반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G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와 재혼하여 재산을 합치고 여러 번 거주지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한 자금까지 투입하게 되었다. 피고와 G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부족한 금액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중소기업은행은 대출명의자의 수익이 없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와 G은 부득이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G은 건강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G과 피고는 재산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G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관계로 G에게 1/4 지분을 남기고 3/4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G과 피고는 부부로서 함께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상 공헌을 고려하고 부부간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G로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을 이전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것을 수익자가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들과 같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G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장수영

별지